

# 보도자료

# 计引 医络桃 对故则于 吉州 圣林 子四 中山

			*
보도 일시	2022. 12. 6.(화) 11:00 12. 7.(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6.(화)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044-201-237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희선(044-201-2372)

##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

### 주요 내용

- □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 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①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 2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동물전시·미용업(현재 등록제) 등도 허가제 전환 검토
    - 영업장 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 강화,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무허가·무등록 처벌 강화\* 및 영업폐쇄 조치 신설 등
      - \* 벌금 500만 원  $\rightarrow$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 ❸ 맹견·사고견 관리를 위한 기질평가 시범사업 추진('23)
    - **맹견 사육허가제, 사고견 맹견지정** 등의 시행('24.4)에 앞서 기질 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진행
  - ❹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23.4) 및 동물보호센터 확충
    -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관리(시설기준 등 요건 충족을 위해 2년 유예)
      - \* 민간보호시설의 입지,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보호시설 개선 방안 마련('23.상)
    - 지자체 보호센터를 확충하여 동물 보호 여건 개선('22~'23, 신규 22개소)
  - **⑤** 동물복지정책을 전담하는 국(局) 단위 조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 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 사고견·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소방·국토부 등) 등

##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 ▶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 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 (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판매업 등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 ('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런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③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23)를 추진할계획이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 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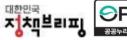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 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 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 2.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 3. 「동물복지 강화 방안」주요 내용
  - 4. 주요 이슈별 동물복지 강화 방안

별첨 「동물복지 강화 방안」





## 동물복지 강화 비전 및 전략

## 비전

## 동물복지를 강화하여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One-Welfare 실현

## 달성 목표

- ◇ 동물학대·유기 없는 성숙한 동물 돌봄 체계 구축
  - \* 연간 유실·유기 발생 : ('21년) 12만마리 → ('27년) 6만마리 유실·유기동물 입양·기증률 : ('21년) 33% → ('27년) 50%
- ◇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
  - \* 동물등록률 : ('21년) 53.4% → ('27년) 70% 개물림사고 : ('21년) 2,100명 → ('27년) 1,000명

## 추진 전략

# 주요 과제

1.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 (제도) 동물복지 중심으로 법체계 개편
- (인식)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개선** 
  - (통계)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전략 및 과제

2.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 (돌봄) 반려동물 소유자 **돌봄 의무** 확대
- (학대) 범위 확대<sup>\*</sup> 및 재발방지 강화 \* 상해·죽음 유발 → 고통을 주는 행위
- (동물유기) 등록 활성화 등 예방책 마련
- (개물림사고) 맹견사고견 양육·영업관리 강화
- (영업·실험·농장) 상업적 이용의 관리·투명성 제고
- 3.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 (학대) 현장 대응, 처벌 등 실효성 강화
- (동물유기) 보호시설 개선 및 **입양 활성화**

## 추진 체계

- 동물복지 정책의 논의·조정을 위한 폭넓은 거버넌스 구축
- 동물복지를 전담하여 추진할 중앙지방단위 추진체계 마련

# 붙임2 동물복지 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구	분	주요 선진국 동향	우리나라
법치	ᆌ계	<ul> <li>► 동물보호법 → 동물복지법 → 헌법(존엄성) (일본) (영국·미국·독일) (독일, 스위스)</li> <li>► 정책이 확대되면서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li> <li>* (영국) 개 브리딩·판매법, 위험한 개법 등, (독일) 개보유법 등, (미국) 반려동물·여성 안전법, 동물학대 및 고문방지법 등</li> </ul>	→ 동물보호법
보호	범위	<ul> <li>▶ 척추동물을 넘어 보호 동물 대상을 대폭 확대</li> <li>* (독일) 살아있는 모든 동물, (영국) 갑각류, 두족류 등 보호범위 확대, (스위스) 어류에 대한 실질적 보호 규정 적용</li> </ul>	• <b>척추동물</b> 로 한정 * 식용목적 어류 제외
	양육	· 싱가포르 36%, 독일 47%, 영국 59%, 프랑스 65%, 미국 70%	<b>▶ 26.9%</b> 양육('21)
	자격	<ul><li>▶ 반려견 면허제 등 자격, 입양 전 교육 의무 요구</li><li>★ (독일) 면허제(니더작센주), (스위스) 의무 교육제(취리히)</li></ul>	→ 미도입
소유 ·	돌봄	<ul> <li>반려동물의 돌봄의무를 폭넓게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li> <li>* (미국) 먹이 제공 등 위반 시 경범죄</li> <li>(독일) 사람과의 충분한 접촉, 자연 채광 보장 등 위반 시 벌금</li> </ul>	→ 위반 미처벌
관리	안전	<ul> <li>▶ 물림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 기질평가, 입마개 착용 등 조치</li> <li>* (미국) 기질평가 후 맹견 지정, 관리의무 부과, (독일) 개 압수 등, (호주) 입마개 의무화, (프랑스) 기질평가 후 사육허가</li> </ul>	• <b>기질평가제 마련</b> ('24.4.시행)
	환희	<ul> <li>맹견 관리 의무가 강하고, 번식·수입·사육 금지 국가도 존재</li> <li>* (미국) 사육장소 통제, 맹견표시 등 강화된 의무 부과 (영국·독일) 맹견의 번식·수입·사육 등 원칙적 금지</li> </ul>	▶ 입마개 등 의무 ▶ <b>사육허기제 미련</b> ('24.4.시행)
	행위	<ul> <li>&gt; 동물 질병·상해 유발 → 고통 발생 → 정상적인 행동 존중</li> <li>(일본) (영국·독일) (스위스)</li> </ul>	• <b>상해·죽음 시</b> <b>학대</b> 인정
학대		▶ 영국 6개월, 프랑스 2년, 독일 3년, 일본·호주 5년, 미국 7년 등	→ 3년
	처벌	▶ (미국) 동물 소유금지, 학대행위자 신상공개, 동물 압류·몰수 등, (프랑스) 동물 압류·몰수, 관련 직업 금지, (독일) 동물 소유 금지	→ 미도입
동물	비율	▶ 뉴질랜드(개) 45%, 프랑스(개·고양이) <b>78%, 영국</b> (개) <b>92%</b>	<b>▶ 54%</b> 등록('21)
등록	방식	<ul><li>・ 내장칩을 기본으로 하되, 문신(미국·프랑스)이나 태그(독일) 허용</li></ul>	→ 내·외장칩
	관리 체계	· 영리/비영리, 관리 필요성(번식~전시) 등에 따라 영업을 분류하며, 갱신제(영국 1년, 미국 3년, 일본 5년)로 운영	→ 영업 8종 → <b>갱신제 미도입</b>
영업	판매 제한	▶ 영업허가 규정 → <b>펫숍·온라인 판매 제한</b> → <b>근친교배 제한</b> (미국 일부 주) (영국·독일·벨기에) (네덜란드·노르웨이)	▶ 판매제한 등에 대한 <b>제한 없음</b>
	동물 장례	▸ 동물 <b>장례 문화가 보편화</b> 되어 있으며, <b>매장 방식 허용</b> * (미국 일부 주, 프랑스 등) 주정부에서 장묘시설 운영	• 동물 매장 금지 • 장묘업화장 등 등록
	동물 ·보호	<ul> <li>▶ 민간단체가 구조·보호를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기도 함(일본, 대만, 미국 일부 주)</li> </ul>	· 지자체 센터 및 민간시설 운영
동물	실험	▶ 미국·EU는 <b>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b>	› 화장품 동물실험 <b>원칙적 금지</b>

# 붙임3 「동물복지 강화 방안」주요 내용

구분		 현재	「동물복지 강화대책」주요 내용		
		연세	개정법률('22.4) 시행	예산 지원 및 추가 제도 개편	
법	체계	→ 동물보호법	<ul><li>・개정법률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23.4)</li><li>- 맹견 조항 등 '24.4월 시행</li></ul>	<b>▸ 동물목시법</b> 으로 개편   *'23 영구 '24 제정안 박이	
	민간 벽할	▶ 동물보호단체 <b>역할·권한 미흡</b>	▶ 명예동물보호관 제도('23.4) * 명칭변경(기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ul> <li>홍보·교육 협력사업 추진('23)</li> <li>동물보호단체에 학대행위 조사·</li> <li>자문 등 전문적 역할 부여 검토</li> <li>*해외사례조사, 연구용역 등, '23~</li> </ul>	
	통계 구축	▶ 국민의식조사 추진 (매년, 농식품부)	<ul> <li>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li> <li>구축('23.4)</li> <li>* 영업자 관리, 맹견·기질평가 등 정보 통합·관리</li> </ul>	<ul> <li>▶ 동물복지 의식조사로 개편('23)</li> <li>▶ 동물복지 관련 정보 공개 확대('23)</li> <li>▶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조사('24)</li> </ul>	
	자격	▶ 26.9% 양육('21) * 미국 70% 프랑스 65% ▶ 별도 양육 자격 없음	-	<ul> <li>▶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전 교육 시범사업 추진('23~)</li> <li>▶ 반려동물 양육효과 연구, 조사 등을 통한 인식개선('24)</li> <li>▶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연구, '23)</li> </ul>	
소유·관	돌봄	<b>▸ 선언·추상적</b> 규정 <b>▸ 위반 시 미처벌</b>	<ul> <li>돌봄의무 일부 확대</li> <li>* 2m 이상 줄로 묶어 기르기, 위생·건강상태 정기관찰 등('23.4)</li> </ul>		
리	안전 관리	→ 벌칙 최대 3년/ 3천만원 → 사고견 관리 미흡 → 맹견 입마개·책임	<ul> <li>▶ 보호자 없이 이탈금지, 안전조치 지역(준주택) 추가('23.4)</li> <li>▶ 사고견 기질평가제 도입('24.4)</li> <li>▶ 맹견 수입신고제 및 사육</li> </ul>	· 선진국과 같이 맹견 영업(생산·	
		<b>보험</b> 등 의무 부여	허가제 도입('24.4) ▶ 맹견 영업허가제 마련('24.4)	수입·판매 등) 제한 검토 * 외국사례 조사, 의견수렴 등('23~)	
	행위	▶ 동물 <b>상해·죽음 시</b> <b>학대</b> 인정	▶ 돌봄의무 위만으로 <b>국이는</b> 행위를 학대로 명시('23.4)	▶ 동물에게 <b>고통을 주는 행위</b> 까지 학대로 검토(연구 등, '24~)	
학	처벌	<ul><li>3년/3천만원</li><li>(실제 선고 낮음)</li><li>형벌 외 가능한 조치 없음</li></ul>	<ul> <li>학대행위자 수강·이수명령 도입('23.4)</li> <li>피학대동물 소유자 반환시 사육계획서 제출의무화('23.4)</li> </ul>	<ul> <li>►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협의, '23~'24)</li> <li>► 학대행위자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검토(~'23 연구, '24 개정)</li> </ul>	
대	현장 대응	→ 피학대동물 3일 이상 격리·보호 → 실질적인 격리· 보호조치 미흡	<b>▸ 최소 격리기간 확대</b> ('23.4) * 최소 3일 이상 → <u>5일</u>	<ul> <li>▶ 동물학대 대응매뉴얼 마련('22.12)</li> <li>▶ 구조·보호비용 현실화('23~'24)</li> <li>▶ 동물학대 부검 전문인력 확대, 수의법의 학문체계 정립('23~'24)</li> <li>▶ 명예동물보호관 역할 확대('23)</li> </ul>	

구분		현재	「동물복지 강화대책」주요 내용		
		연제	개정법률('22.4) 시행	예산 지원 및 추가 제도 개편	
පුර :	관리 체계	▶ 영업 8종 - 1허가(생산)·7등록* * 수입·판매·장묘· 위탁·전시·운송·미용	<ul> <li>▶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전환 및 준수사항* 강화('23.4)</li> <li>★ 거래 시 건강상태 확인 등</li> <li>▶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23.4)</li> </ul>	<ul> <li>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의 허가제 전환 검토('24~)</li> <li>영업 이력관리<sup>*</sup> 기반 확충('24~)</li> <li>* 거래내역 신고제 대상 확대 및 부모견 관리 등 관리정보 개선</li> </ul>	
업	판매 제한	→ 판매방식 등에 대한 <b>제한 없음</b>	<ul><li>▶ 반려동물 판매·광고 시 영업 허가번호 표시 의무화(*23.4)</li></ul>	▶ 반려동물 <b>온라인 판매 제한</b> 등 관리·규제 강화('23~)	
	동물 장례	• 동물 매장 금지 * 장묘업(회장 등) 등록	▶ 동물장묘업에서 사체 처리 시 지자체 신고 의무화('23.4)	• <b>일반폐기물 처리 금지</b> 검토 * 반려동물부터 검토('23~)	
	oin oki 나 마 마	▶ <b>54%</b> 등록('21) * 내장형 50.3%, 외장형 36.6% 등	▶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화(23.4) * 판매업(기존) + 생산·수입업	<ul> <li>▶ 전입신고(주소변경)시 동물등록 정보 자동변경('24)</li> <li>▶ 생체정보 등록 도입(규제특례, '22~'24)</li> <li>▶ 농촌(읍·면)지역 동물등록 검토('24)</li> </ul>	
유 실 · 유 기	구조 · 보호	<ul> <li>지자체 동물보호 센터 운영</li> <li>민간보호시설 관리 기준 부재</li> <li>구조·공고 10일 후 안락사 가능</li> </ul>	<b>▸ 동물인수제</b> * 도입('23.4)	<ul> <li>N자체 동물보호센터 확충         '22~'23 신규 22개소(개·보수 1)         * 구조·보호 + 유기·학대 예방·홍보 등</li> <li>민간보호시설 입지·운영 여건 등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23.上)</li> <li>유실·유기동물 의무 보호기간 마련 검토(예: 30일)</li> <li>* '23, 실태조사 및 지자체 의견수렴</li> </ul>	
	입양 활성화	▶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b>32.1</b> %	-	<ul> <li>▶ 전문입양센터 설치(2개소, '23)</li> <li>▶ 보호동물 분양 시 돌봄·양육</li> <li>계획서 제출 의무화 검토('23)</li> </ul>	
	면 점	<ul> <li>기관별 윤리위가 실험계획 심의</li> <li>실험동물 전담 관리 인력 부재</li> <li>화장품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li> </ul>	<ul> <li>▶ 실험윤리위 기능 강화* 및</li> <li>전임수의사제** 도입('23.4)</li> <li>* 변경심의제, 실험중지요구 등</li> <li>** 연간 1만마리 이상 보유사용 등</li> <li>▶ 공용실험윤리위* 운영('24.4)</li> <li>* 기관 공동 실험 봉사동물 실험 등</li> </ul>	<ul> <li>▶ 보호단체 추천위원 인력풀 (pool) 관리('23)</li> <li>▶ 대체시험법 조사 및 제공</li> <li>★ 전문가 협의('23), 정보시스템 공개('24)</li> </ul>	
	물복지 산인증	▶ 동물복지축산인증 운영(검본 위임) * 7개 축종, 364개소 (산란계, 육계321등)	<ul> <li>• 민간 전문기관 인증 위탁,</li> <li>인증갱신제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24.4)</li> <li>* 복지축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 등</li> </ul>	<ul> <li>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개선 및 전체 농가 적용 검토</li> <li>* 지정기준 개선('23), 확산 검토('24)</li> <li>· 동물복지 축산컨설턴트 육성('24)</li> <li>• 인증대상 축종·시설 단계적 확대 (이해관계자·전문가 논의 등, '25~)</li> </ul>	

# 붙임4 주요 이슈별 동물복지 강화 방안

# 1. 동물학대 근절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학대 행위	▶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 질병 등을 유발한 경우 학대로 처벌 ※ 명백히 동물학대로 보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동물의 상해, 질병 등이 입증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	▶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 질병을 발생시키는 행위'에서 ' <b>불필요한</b> 고통을 주는 행위'로 확대 검토 (연구 등, '24~)
처벌	<ul> <li>▶ 법정형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li> <li>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li> <li>실형이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li> <li>* (16√21) 실형 17명 집행유예64, 벌금 212</li> </ul>	▶ 학대행위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동물 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런(~'24) *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의 참고기준 으로, 양형기준 이탈 시 그 이유를 기재토록 하여 일정 구속력 부여
현장	<ul> <li>▶ 학대신고 시 지자체에서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 및 치료·보호</li> <li>▶ 격리·보호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 요청 시 구조한 동물 반환</li> </ul>	<ul> <li>▶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및 치료·보호('23.4.시행)</li> <li>* 진료·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 확보</li> <li>▶ 피학대동물 몰수 등 도입 검토 (연구 등, '23~'25)</li> </ul>
대 <del>응</del>		▶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 지자체 등 일선현장 배포('23) * 세부대응절차 유형별 동물학대시례 등
재 발 방지	➤ 동물학대 처벌은 강화되어 왔으나, 처벌 외 <b>재발방지 조치는 미비</b> * ('12)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8) 2년/2천→('21) 3년/3천	<ul> <li>▶ 학대행위자에게 형벌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23.4. 시행)</li> <li>▶ 일정기간 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조치 도입(24)</li> </ul>

# 2. 개물림사고 예방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소유자 관리의무	▶ 소유자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의무 및 처벌은 미비* * 현재 맹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규정	▶ 보호자 등 없이는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시 처벌* ('23.4. 시행) *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사고 발생 시 최대 징역3년/3천만원
맹견 관리	▶ 맹견 사육에 대한 자격·기준이 부재하여, 사육 이후 관리의무 위반이나 물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제재·처벌 불가	▶ 사육허가를 받은 자만 맹견을 기를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개물림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 <sup>*</sup> ('24.4. 시행) * 기질평가를 통해 개의 공격성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사육 허가 - 공격성이 높을 시 허가거뷰(동물 양도 등) 또는 예외적으로 안락사 가능
	▶ 동물등록한 맹견 마릿수 외 국내 맹견의 번식·사육 현황에 대한 파악 불가능	▶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 영업허가제를 도입하여 국내 맹견 현황을 파악하고, 맹견사육 허가 등 관리의 누수 방지 ('24.4 시행)
사고견 관리	▶ 개물림사고 발생 시 사고견을 소유자 판단에 따라 계속 기르 거나 안락사하는 등 기준 부재 * 사례) 울산 초등생 물림사건('22.7.) 당시 사고견의 처리가 문제됐으나, 동물단체가 임시보호하는 것으로 협의	▶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는 기질평가를 통해 <b>맹견으로</b> 지정하거나, 교육·훈련 명령, 안락사 등 조치('24.4. 시행)

# 3. 동물 유기 예방 및 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동물등록 활성화	▶ 구조되는 유실·유기동물의 83.7%가 미등록견으로, 여전히 동물등록 활성화 노력 필요 ▶ 도시지역 유기동물은 감소세	<ul> <li>▶ 반려동물 판매 등 영업단계 에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여 미등록견 최소화('23.4.시행)</li> <li>* 판매업 → 생산·수입업 추가</li> <li>▶ 등록방식 간편화를 위해 생체정보(코주름 등) 등록 방식 도입(규제특례 중, '22~'24)</li> <li>▶ 농촌지역 유기 방지를 위해</li> </ul>
	인데 반해 <b>농촌지역은 증가세</b> * 유기동물 증감률('19 대비 '21): 도시 △15.2%, 농촌 2.8%	읍·면 등록 의무화 검토(*24)
	<ul><li>▶ 반려동물의 입양에 대한 별도 절차·규정이 없어 충동적인 입양 후 유기하는 문제</li></ul>	<ul><li>▶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23)</li><li>* 동물보호센터 시범사업 및 해외 사례조사 등 연구용역</li></ul>
유기 예방	<ul> <li>▶ 유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 중이나,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어 불가피한 유기 발생 우려</li> </ul>	<ul> <li>▶ 소유자의 동물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가 동물 인수·재입양('23.4.시행)</li> <li>* 병역복무,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등</li> </ul>
	▶ 길고양이·마당개의 비계획적 번식 등으로 인해 유기 발생 *1세 미만 유기동물이 전체 유기 동물의 48.5%	▶ <b>중성화 사업을 확대</b> 하여 번식 억제('23~)
동물 보호 센터	▶ 보호센터 내 동물학대, 전염병 확산 등 보호여건 열악	<ul> <li>▶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종사자 의무교육 도입('23.4.시행)</li> <li>▶ 인력기준을 신설하여 보호 동물 관리수준 제고('23.4.시행)</li> </ul>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보호·분양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b>내부번식·</b> <b>애니멀호딩</b> 등 문제 심각	* 2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 확보

# 4.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구분	현행	개선
	▶ 동물생산업자(영업 허가제) 준수 사항을 강화('21)하여 비인도적인 반려동물 번식 등을 규제 * 모견의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 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 *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 확보	▶ 동물수입·판매업 등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영업자준수사항 강화('23.4.시행)  * 반려동물 수입신고 시 신고한목적과 다른 용도로 동물 사용 금지  * 반려동물 판매 등 표시·광고 시 영업허가번호 표시, 건강상태 확인
생산 판매 등	▶ 영업자별로 보유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고 있을 뿐, 판매 등 이력관리 미비	▶ 동물생산·수입·판매업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23.4.시행) 하고, 이를 반려동물 이력관리 제도로 고도화('24~)
	▶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 * 영국 등 해외는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브리더를 통한 직접 분양만 가능토록 규제강화 추세	▶ 책임있는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영업자 직접·대면 판매를 원칙 으로,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관리·규제 강화('24~)
전시 등	▶ 동물전시업* 등이 동물보호 사각지대로 대두 * ('22.11.) 서울 마포 소재 개·고양이 라쿤 등 전시·체험 카페에서 업체 대표의 동물학대, 관리부실 등 발생	▶ 동물전시업 등 현행 등록업을 허가업으로 전환하고 시설· 영업기준* 강화 검토('24~) * 학대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등
불법 영업	▶ 무허가·무등록 영업 시 처벌 수준(500만원 이하 벌금)이 약하며, 처벌 외 불법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 없음 ※ 벌금을 내고 불법영업 지속	<ul> <li>▶ 처벌기준 강화("23.4. 시행)</li> <li>* (무허가) 징역 2년 /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징역 1년 / 벌금 1천만원</li> <li>▶ 영업장 폐쇄조치 도입("23.4. 시행)</li> </ul>